

목 차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 I.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1
- II.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 11



2020. 6. 23.

1.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12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13
3. 휴양콘도미니엄업	15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16
5. 아영장업	18
6. 관광공연장업	20
7. 국제회의시설업	22
8. 국제회의기획업	24
9. 외국인호텔·유치업	25
10. 카지노업	26
11.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27
12. 기타유원시설업	29
13. 관광유통식점업, 외국인전용유통식점업	30
14. 관광식당업	31
15. 관광면세점(보세판매점, 사후면세점)	33
16. 관광순환버스업	35
17. 관광펜션업	37
18. 관광궤도업	39
19. 한국체험업	40

20.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42
2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4
22. 관광사진업	45
23. 관광유람선업	46
24. 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48
25. 호텔리조	50
26.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51
27.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	52
28.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53
29.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54
30.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속박시설	55
3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56
3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57
33. 자동차대여사업	59
34. 수상·수중레저사업	60
35.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62
36.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63
37. 관광지원서비스업	64
38.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66
III. 응자 업무처리 안내 및 응자신청서	67
1. 관광협회 응자취급 안내문	68
2. 관광기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	70
3. 금융기관 응자취급 안내문	73
4. 금융기관 응자금 자금배정 업무처리기준	76
5. 응자신청서	80
6.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87
IV. 질의응답 사례(Q&A)	88
V. 참고자료	96
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현황	97
2. 업종별 응자지원현황	100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응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응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I.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응자지원지침

1. 응자 규모 : 1,0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응자대상에서 제외함

2. 응자 대상 업종, 응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대상 업종	접수처(문의처)	신청한도
운영 자금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경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천문학관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2079-2446~7 / ④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철정)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판방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전선업			
한국체험업	○ 시·도 관광협회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토마이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숙박업			
관광과 유패 품질업체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자금구분	대상 업종	접수처(문의처)	신청한도
자금	대상 업종	접수처(문의처)	신청한도
여행업	○ 대체광장협회 (☎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증평로 10 삼성 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동 204호)	○ 시·도 관광협회 ○ 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07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온해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관광지 관광단지·관광복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일반여행업	○ 시·도 관광협회 ○ 한국호텔업 ○ 한국관광호텔업 (☎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경기빌딩 402호)	○ 관광호텔업 ○ 한국호텔업협회 (☎02-729-6683) 대구은행(☎053-740-2223) 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3) 대구은행(☎053-740-2223) 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국민은행(☎02-2073-3124) 전북은행(☎063-250-7615) 한국씨티은행(☎02-2004-2540) KEB하나은행(☎02-2002-1642) NH농협은행(☎02-2080-7634)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자금 지원 현황(100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관광지·관광단지· 관광복구 내 사업은 200억원 이내 대기업·중견기업 또는 특금호텔은 제외)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경남은행(☎055-290-8669) 광주은행(☎062-239-6507) 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3) 대구은행(☎053-740-2223) 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국민은행(☎02-2073-3124) 전북은행(☎063-250-7615) 한국씨티은행(☎02-2004-2540) KEB하나은행(☎02-2002-1642) NH농협은행(☎02-2080-7634)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운영	○ 한국MICE협회 (☎02-3476-8325 / ☎04637 서울시 종로구 토지로 18, 대우재단빌딩) ○ 시·도 관광협회 ○ 한국카자노암관광협회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세물안로5길 37, 도림빌딩)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온해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관광지 관광단지·관광복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자금	국제회의기획업 ○ 한국카자노암관광협회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세물안로5길 37, 도림빌딩)	○ 한국MICE협회 (☎02-3476-8325 / ☎04637 서울시 종로구 토지로 18, 대우재단빌딩) ○ 시·도 관광협회 ○ 한국카자노암관광협회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세물안로5길 37, 도림빌딩)	○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온해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관광지 관광단지·관광복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기금	○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 신축, 증축, 구입 - 하반기 소요금 1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금(45석)호텔은 소요 자금의 70%, 40억원 이내

자금구분	대상 업종	접수처(문의처)	신청한도
자금	○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온해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관광지·관광단지·관광복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 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 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금(45석)호텔은 소요 자금의 70%, 40억원 이내	
시설	○ 관광호텔업 ○ 한국호텔업 ○ 한국관광호텔업 ○ 가족호텔업 ○ 호스텔업 ○ 소형호텔업 ○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호텔업 ○ 한국호텔업협회 (☎02-729-6683) 대구은행(☎053-740-2223) 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3) 대구은행(☎053-740-2223) 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국민은행(☎02-2073-3124) 전북은행(☎063-250-7615) 한국씨티은행(☎02-2004-2540) KEB하나은행(☎02-2002-1642) NH농협은행(☎02-2080-7634)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자금 지원 현황(100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관광지·관광단지· 관광복구 내 사업은 200억원 이내 대기업·중견기업 또는 특금(45석)호텔은 제외)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경남은행(☎055-290-8669) 광주은행(☎062-239-6507) 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3) 대구은행(☎053-740-2223) 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국민은행(☎02-2073-3124) 전북은행(☎063-250-7615) 한국씨티은행(☎02-2004-2540) KEB하나은행(☎02-2002-1642) NH농협은행(☎02-2080-7634)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자금	○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 신축, 증축, 구입 - 하반기 소요금 1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금(45석)호텔은 소요 자금의 70%, 40억원 이내
기금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응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 운영자금 응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응자현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할산에서 제외 ○ 관광벤처기업, 우수 여행사, 우수 관광기념품개발 등에 대한 운영자금 응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응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 운영자금 응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응자현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할산에서 제외 ○ 관광벤처기업, 우수 여행사, 우수 관광기념품개발 등에 대한 운영자금 응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 신축, 증축, 구입 - 하반기 소요금 1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금(45석)호텔은 소요 자금의 70%, 40억원 이내

3. 용자점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지급
설정처	신청서류 접수기간	3분기 : 2020.6.24.(수) ~ 7.10.(금) 4분기 : 2020.8.31.(월) ~ 9.11.(금)	2020.6.24.(수) ~ 11.13.(금)	
업체	신청 접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용자선정위원회)에서 신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신청 (대출 약정 체결)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선정발표	3분기 : 2020.7.24.(금) 4분기 : 2020.9.25.(금)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3분기 : 2020.7.27.(월) ~ 8.21.(금) 4분기 : 2020.9.28.(월) ~ 10.30.(금)		2020.7.8.(수) ~ 12.11.(금)	
융자금 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접수, 신청기간은 관광사업자가 접수처 또는 취급은행으로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응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풍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구 분	운영자금	상환기간	설정처	시설지급
설정처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서류 접수기간	3분기 : 2020.6.24.(수) ~ 7.10.(금) 4분기 : 2020.8.31.(월) ~ 9.11.(금)
업체	신축·신설/ 증축·증설 기타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용자선정위원회)에서 신사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신청 (대출 약정 체결)
기타	가보수 기타	1~3급(1~3성) 호텔·가족호텔업·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2020.6.24.(수) ~ 11.13.(금)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4. 대출기간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남도, 전경기간은 현금사입사가 접수처 또는 취급은행으로 신청하는 일자 기준일을 움자작행이 초기에 종료될 수 있음.

6. 소요자금 신청범위

다. 적용조건 : 최초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응자금 상환 원로 시까지 적용
(중도 변경 불가) 다만, 응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응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10. 대출금

品略

- 기준금리에서 0.75%p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전용계획
시행사업

100

- 내 가 드** : 국감沟시 총 경영기대에 관한 법률을 '상의 상호율지적한 기업집단
증권기업 : 「증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의 증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을 말함.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월자세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0년 2/4분기 기준금리 : 2.25%

- 증시추구금은 행의 짐사화를 거친 관공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0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글자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체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것을 구축을 그에
 정비 및 비품 등에 한함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요청에

파라 총 소요자금 재획정 가능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0. 1. 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0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응자 가능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종 어느 험난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짐기·비품 구입비용

○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응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응자배정액 이내)

나. 운영자금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 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

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잡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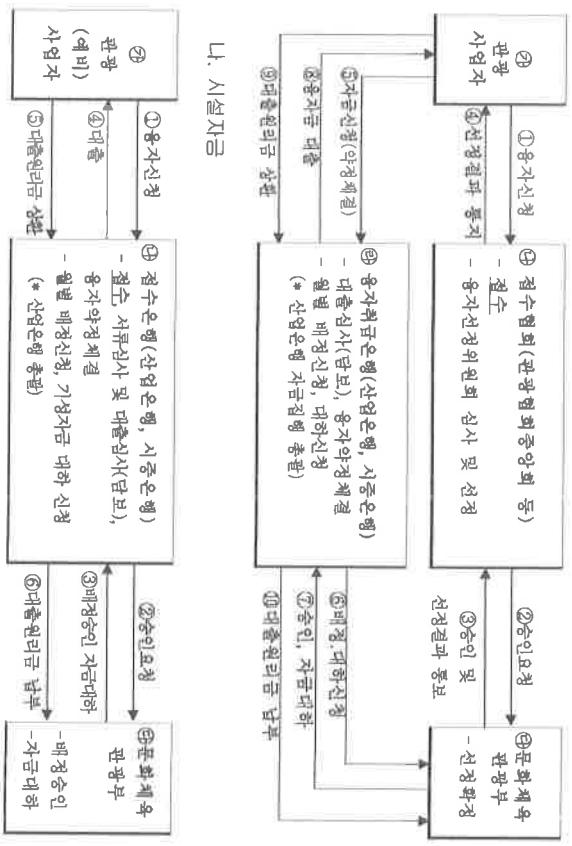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증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총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다. 공통사항

- 관광사업체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응자받을 수 없으며, 3년 연속으로 응자 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응자 신청할 수 있음(2018년부터 적용)
- 특금호텔 또는 (대기업)증권 기업의 경우 당해 반기 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종부 신청할 수 없음.

7. 응자절차

가. 운영자금



다. 운영자금 선정결과 통지(운영자금 ④) 및 시설자금 배정승인(시설자금 ③) 후 응자신청

- 대출신청 후 은행의 업무절차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원될 수 있음.
-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금액에 따라 응자 지원 신청
-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응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하, '공공법인 등'이라 함)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는 응자 배정액의 60% 이내 자금신청 가능
- 관광사업체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응자받을 수 없으며, 3년 연속으로 응자 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응자 신청할 수 있음(2018년부터 적용)
- 특금호텔 또는 (대기업)증권 기업의 경우 당해 반기 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종부 신청할 수 없음.

8.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응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전액 전액 소멸 및 이월를 가

나. 응자신청자는 엄종, 응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응자 신청

- 응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응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다. 운영자금 응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조정 될 수 있음

라. 응자신청자는 직접 응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마.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정부 비자(세부사용명세 보증)

-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응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바.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인증 등을 전제로 응자받은 사업자는 공사 원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

- * 지정·인증 등을 필요하여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인증서 등 인·허가 증빙서류를 응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사.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응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흥

-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응자금 집행내역 (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응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정부 등 응자금을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9. 응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 다음의 경우 기대출된 응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응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응자신청서 및 정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응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응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응자금 상환은행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 응자 시행되기 전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자. 응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응자 받으시기 바람. 응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 응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차. 문제부는 응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연도 응자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응자취급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응자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우, 문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 이 경우, 응자취급은행은 해당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제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타. 응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 서식)를 제출

파. 이 지침은 '20년도 하반기 응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응자금은 종전의 응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당해년도 상·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을자발은 금액의 총 할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될 경비는 제외)
- * 위 회수사유의 경우에 따라 응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응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응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종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벌을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벌을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II.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

1.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물임·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물임·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 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응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등급인정증 사본(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응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함.

3. 휴양콘도미니엄업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응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함.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시설허가 등)를 받은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시설별 허가서 포함)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 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회원모집계획서(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 미등록시 기 대출된 응자금 회수
- 휴양업 종 관광숙박시설(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이 포함된 경우, 해당업종으로
별도 응자신청하여야 함.
-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3. 신청한도(응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일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중인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휴양업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3. 유의사항

-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5. 아영장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아영장업(일반아영장업, 자동차아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아영장업(일반아영장업, 자동차아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음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능 증서
- 재무제표 또는 부기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음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 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음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음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음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음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아영장업(일반아영장업, 자동차아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음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개발행위허가서(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등)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 책임보험 또는 금지 가입 증서

6. 관광공연장업

□ 운영자금

□ 시설 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
- 관광공연장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원로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공연장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응자금 회수

□ 시설 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4. 유의사항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기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7. 국제회의 시설업

□ 운영자금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 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용지신청서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국제회의 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원료 후 반드시 국제회의 시설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용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 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지신청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 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지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 원 이내

※ 신청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8. 국제화의기획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화의기획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 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입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을자금·융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입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함.

9. 외국인환자 유치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서, 최근 2년이내(* 응자신청 공고일로부터 역산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 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급)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급)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 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입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입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0. 카지노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카지노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허가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응자한도액)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 원 이내

* 다만,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는 운영자금으로 신청 가능

4. 유의사항

세부적인 사항은 물임·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 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신고증을 교부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공작물축조허가증 사본·유기기기 매매계약서 사본
- 유원시설업허가증 사본*
-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공사완료 후 반드시 종합·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시·군·구청)받아야 함
- ① 허가 시 기 대출된 응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11.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운영자금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응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2. 기타유원시설업

□ 운영자금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응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3. 관광유총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총음식점업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총음식점업 또는 외국인전용유총음식점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척공신고필증 및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지역관광협회)받아야 함
- 미지정 시 기 대출된 응자금 회수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관광식당을 신축·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가 일반 음식점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함.

14. 관광식당업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 특금호텔 내 한식당을 위 관광식당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지역관광협회)받아야 함
- 미지정 시 기 대출된 응자금 회수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관광식당을 신축·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가 일반 음식점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음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음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산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음자실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음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음자실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음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증축)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음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면세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① 지정 시 기 대출된 음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음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 사업계획서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15.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 운영자금

16. 관광순환버스업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에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9제7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후면세점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운전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
- 재무제표 또는 부기세 교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 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로
버스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운전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버스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버스 등 구입 후 반드시 관광순환버스업으로 지정(시·도지사)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운전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운영자금

17. 관광펜션업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펜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응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건축허가서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펜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 관광펜선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펜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선업(시·군·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대출된 응자금 회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선업으로 지정받는 경우 신청한도 10억원 이내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선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관광펜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선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신청한도 5억원 이내

□ 운영자금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편선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8. 관광궤도업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으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및 시설허가증 사본
- 시설 매매(축조)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궤도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응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으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시설허가증 사본

19. 한옥체험업

□ 운영자금

□ 시설 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옥체험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 등록 시 기대출된 응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 자금(개보수)

4. 신청한도(응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율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룰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 세부적인 시행은 별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옥체험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 지정 시 기대출된 응자금 회수

20.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운영자금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9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원료 후 반드시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아야 함
- 미 인증 시 기 대출된 응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험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9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원료 후 반드시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아야 함
- 미 인증 시 기 대출된 응자금 회수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응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 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읍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읍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읍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읍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읍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2. 관광사진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사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읍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읍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읍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읍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읍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3. 관광유람선업

□ 운영자금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선박 매매(건조)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무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유의사항

- 「매매(건조) 후 반드시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응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무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응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놀임·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기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놀임·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기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4.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운영자금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구입)

1. 신청자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지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사본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 선박 매매(건조)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 구입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4.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임채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1. 신청자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25. 호텔리조트

26.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시설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에 투자하려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일 것
- 해당 응자신청 기간 내 호텔 투자계획이 있을 것
- 호텔운영사와 10년 이상 호텔업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업력 10년 이상인 호텔운영사 또는 관광사업자의 지분참여가 10% 이상일 것
- ※ 호텔리조트 당 반기별 1회에 한해 응자를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해당 반기내 호텔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해당 응자신청 기간 내 호텔 투자계약서 사본
- 10년 이상 호텔업 위탁경영 계약서 사본
- 업력 10년 이상인 호텔운영사 또는 관광사업의 지분참여가 1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관광진흥법 제54조)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동법 제71조)을 시행하고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서 사본,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승인서 사본
- 자금소요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3. 유의사항

- 토지매입비 신청 가능

□ 시설자금(기보수)

1.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관광진흥법 제54조)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동법 제71조)을 시행하고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서 사본,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승인서 사본
- 자금소요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27.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미술관·박물관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박물관·미술관 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박물관·미술관을 운영 중인 자
-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박물관·미술관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28.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공연장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 중인 자
-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공연장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29.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용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용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30.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용지신청서, 숙박업 신고증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지신청서, 숙박업 신고증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3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찰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 사업설명서(사업목적, 보장 및 보수계획, 소요자금 등을 기재)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찰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3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지정 시설의 증축·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찰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운영자금

33. 자동차대여사업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타이寧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지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지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를 배정한도는 불입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지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지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시정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지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지선정위원회가 정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서류

- 용지신청서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 캠핑카 등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여객에게 직접 대여할 목적으로 캠핑카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야영장업체에 대여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 관광기금을 용지하여 구입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용지기간 내 강차, 디폐차, 양도하는 경우, 용자를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34. 수상·수중레저사업

□ 운영자금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수중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기구 및 장비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기구 및 장비 구입자금에 한함

□ 시설자금(개보수)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 제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할산금액임.
- * 단, 임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3. 유의사항

- 수상레저사업 관련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35. 대한민국 대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 시설자금(개보수)

- 신청자격
 - 대마여행 10선 지역(대포코스 내 관광자원)에 있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일반음식점영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해당권역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증
 - 해당권역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 운영자금

- 신청자격
 - 대마여행 10선 지역(대포코스 내 관광자원)에 있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일반음식점영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해당권역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증
 - 해당권역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율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 권역별 연간 30억원(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합산) 한도, '18~21년 한시적 지원

36.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 운영자금

- 신청자격
 - 민관주관의 2일 이상 개최하는 축제·행사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의 후원을 받은 자
- ※ 지방자치단체 주관 축제 및 주민행사, 특장제출만 참여하는 축제, 보조비를 지금받은 축제 등은 제외됨
-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로써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행사진행 참여가 있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단체 (한국관광공사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자
- * '국제회의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거나, 국제기구(UIA, ICCA)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

-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축제·행사계획서
- ※ 국제회의의 경우, 국제회의 기준 충족 여부, 행사진행에 참여하는 국내 국제 회의기획업(PCO) 관련 정보, 3년간 국제회의 개최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해당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율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37. 관광지원서비스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구입)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응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0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별도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함.

38.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응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사본
-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KAHF) 출득기관 지정서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응지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응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응자선정위원회가 정함.

III. 응자업무처리 안내 및 응자신청서